



#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법률 안내

인증제와 신고제를 중심으로



#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



#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



##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

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**일정기준**을 갖춘 청소년활동**프로그램**에 대해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**활동기록**을 유지·관리·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



# 인증신청 대상



## 인증신청 불가 대상



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



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



운영시간 최소 기준(2시간 미만) 미충족 활동

청소년수련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대상은 신청 불가



## 인증 신청할 수 있는 대상

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

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



청소년이용시설



개인·법인·단체 등

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



##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

(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제2항)



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



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



# 인증신청 대상

## 위험도가 높은 활동 (시행규칙 제15조2제2호)



### 수상활동

래프팅, 모터보트, 동력요트, 수상오토바이, 고무보트, 수중스쿠터, 레저용 공기부양정, 수상스키, 조정, 카약, 카누, 수상자전거, 서프보드, 스킨스쿠버



### 항공활동

패러글라이딩, 행글라이딩



### 산악활동

암벽타기(자연암벽, 빙벽), 산악스키, 야간등산(4시간 이상)



### 장거리 걷기

10km 이상 도보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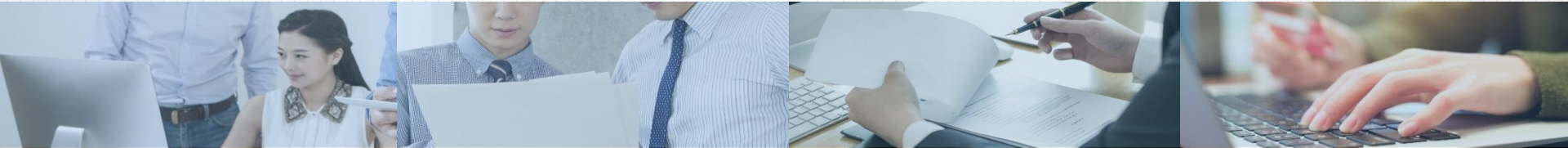


### 그 밖의 활동

유해성 물질(발화성, 부식성,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), 하강레포츠,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·기구·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



# 인증 추진절차



인증신청  
인증신청자

활동실시 **45일 전** 인증신청



인증심사  
인증심사원



인증심의  
인증위원회



인증고시  
활동진흥원



기록관리  
운영담당자

활동종료 후 **15일 내** 통보



활동운영  
운영담당자



실시일자통보  
운영담당자

활동실시 **14일 전** 통보



# 인증기준

구분	영역/유형	기준
공통기준	활동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프로그램 구성</li> <li>2. 프로그램 자원운영</li> </ul>
	지도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 지도자 자격</li> <li>4. 지도자 역할 및 배치</li> </ul>
	활동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</li> <li>6. 안전관리 계획</li> </ul>
개별기준	숙박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숙박관리</li> <li>2. 안전 관리인력 확보</li> <li>3. 영양관리자 자격</li> </ul>
	이동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숙박관리</li> <li>2. 안전 관리인력 확보</li> <li>3. 영양관리자 자격</li> <li>4. 이동관리</li> <li>5. 휴식관리</li> </ul>
특별기준	위험도가 높은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지도자 배치</li> <li>2.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</li> </ul>
	학교단체 숙박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</li> </ul>
	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</li> </ul>
	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</li> </ul>
	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</li> </ul>



# 프로그램 세부계획서와 인증기준의 비교

## 공모사업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양식

### 1-3. 프로그램 세부계획서

#### 프로그램명

\*양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, 페이지수를 기재하여 주세요.

#### 1. 배경 및 목적

\*개발된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특성, 참여 청소년의 흥미와 욕구, 참여 청소년의 흥미와 욕구에 따른 사업방향 등 기술

\*프로그램 개요서 상의 목적 및 목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

#### 2. 세부 내용

1. 일정별·회기별 세부추진내용 \* '표' 등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

<기본형> \* 1-2. 프로그램 개요서 ⑦활동유형에 '기본형'으로 선택한 경우 작성

일정	구분	시간	소요시간	단위 프로그램명	비고
3월	1회기	10:00~11:00	60분		
		11:00~12:00	60분		
4월	2회기	10:00~12:00	120분		

<숙박형> \* 1-2. 프로그램 개요서 ⑦활동유형에 '숙박형'으로 선택한 경우 작성

시간	1일차	2일차
09:00	출발	기상 및 세면
10:00		단위 프로그램명(90분)
11:00		평가 및 마무리(30분)
12:00	점심식사	점심식사
13:00	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(60분)	집으로
14:00	단위 프로그램명(120분)	
15:00		
16:00	단위 프로그램명(120분)	
17:00		
18:00	저녁식사	
19:00	단위 프로그램명(120분)	
20:00		
21:00	취침준비 및 취침	

\* 1-2. 프로그램 개요서 ⑦활동유형에 '기본형'과 '숙박형'을 중복 선택한 경우, <기본형> 양식 '비고'란에 숙박형으로 작성한 후 <숙박형> 양식에 맞춰 작성

##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 유사내용

### 공통기준1

- (배경 및 필요성)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근거
- (배경 및 필요성) 기사, 논문 등 객관적 근거
- (목적) 배경 및 필요성과의 연관성

### 공통기준1

- (프로그램 일정) 오리엔테이션과 마무리



# 프로그램 세부계획서와 인증기준의 비교

## 공모사업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양식

### 2. 회기별 세부 프로그램 계획서

- ※ 10회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시, '세부 프로그램 계획서'는 10개가 되어야 함
- ※ 숙박형 프로그램의 경우는 단위활동별로 작성

단위(회기) 프로그램명	000 프로그램	일 정 (운영시간)	4월8주 (5시간) *구체적 일정 및 운영시간 작성
단위(회기) 프로그램 목적		대상 및 인원	중학교 1학년 35명
활동장소	00골짜기(수련의숙)	<input type="checkbox"/> 실내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외 <input type="checkbox"/> 야외 (중복선택 가능)	
준비물			
활동단계	활동내용	중점(특이) 사항	
도입			
전개			
정리			

### 3. 지도인력 확보

4. 시설 및 장비 확보 · 활용
5.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
6. 안전 및 위생관리
7. 참가자 선정 방법

##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 유사내용

### 공통기준1

- (프로그램 내용) 프로그램 일정표에 제시된 각각의 단위프로그램 계획서 기술
- (프로그램 내용) 단위프로그램 내용 기술은 제3자가 확인하더라도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술

### 공통기준3

- (전문지도자)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의 전문성 수준
  - ex) 해당활동 경력 3년 이상, 오리엔티어링 3급 소지자
  -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지정된 지도자 전문성으로 표기



# 프로그램 세부계획서와 인증기준의 비교

## 공모사업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양식

### 2. 회기별 세부 프로그램 계획서

- ※ 10 회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시, '세부 프로그램 계획서'는 10개가 되어야 함
- ※ 숙박형 프로그램의 경우는 단위활동별로 작성

단위(회기) 프로그램명	000 프로그램	일 정 (운영시간)	4월3주 (5시간) *구체적 일정 및 운영시간 작성
단위(회기) 프로그램 목적		대상 및 인원	중학교 1학년 35명
활동장소	00골짜기(수련의숲)	<input type="checkbox"/> 실내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외 <input type="checkbox"/> 야외 (중복선택 가능)	
준비물			
활동단계	활동내용	중점(특이) 사항	
도입			
전개			
정리			

### 3. 지도인력 확보

### 4. 시설 및 장비 확보·활용

### 5.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

### 6. 안전 및 위생관리

### 7. 참가자 선정 방법

##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 유사내용

### 공통기준2

- (장비확보) 단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를 모두 기술

### 공통기준5

- (공간관리) 모든 활동장의 확보
- (공간관리)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
- 전기, 소방, 가스, 엘리베이터, 점검, 위생, 수질 등

### 공통기준6

- (안전교육) 청소년 및 지도자 사전 안전교육
- (비상대비 설비 및 기구) 구급용품 및 장비 구비
- (사고대책 및 통보계획) 중대사고 및 경미사고 등
- (보험) 대인1인당8,000만원이상, 대물사고당200만원이상  
-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등



# 프로그램 세부계획서와 인증기준의 비교

## 공모사업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양식

### 3. 평가계획

\*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, 사후관리 계획 등 기술(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방안 포함)

✓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계획은 '1.2. 프로그램 개요서 ③ 핵심목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.

- ③1. 핵심역량의 측정도구는 진흥원에서 공모사업 선정 대상 기관·단체에게 향후 제공 예정이며
- ③2. 자율역량의 경우 어떤 측정도구로 검증할 계획인지 측정도구 명 출처 등을 명시하여야 함.

#### 1. 평가계획

- 프로그램 목적 혹은 목표에 따라 잘 수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
- (고려사항) 과정·결과 평가계획이 확인되도록 작성

#### 2. 평가도구

- 프로그램 목적 혹은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, 질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

### 4. 기대효과

\* 목적 및 목표의 달성수준, 타 기관 보급가능성, 수혜자의 체감 정도 등 성과중심 기대효과

##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 유사내용

### 공통기준1

- (평가계획) 평가계획과 평가도구 제시
- (평가계획) 종결평가의 청소년대상 목적 및 목표와 연관된 만족도,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포함





# 프로그램 세부계획서와 인증기준의 비교

## 공모사업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양식

### 5. 소요예산 \*금액은 원단위 기재

#### 1. 총사업비

(단위 : 원)

구분	금액	세부항목	금액	비율(%)	비고
총 사업비	(100%)	국고보조금			
		기관부담액			
		청소년참가비			

#### <작성 전 필독>

1. 지출항목은 세부프로그램이 아님. 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
2. <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> 을 준수하여 작성

#### 1) 국고보조금

(단위 : 원)

구분(비목)	보조세목	세부내용	산출내역	총액
합 계				10,000,000
운영비(210)	공공요금 및 제세(02)	· 보험비	· 100,000 × 1식 = 100,000	100,000
운영비(210)	임차료(07)	· 캠페인 부스 임차료	· 1,000,000 × 1식 = 1,000,000	3,000,000
		· 캠프 장소 임차료 등	· 2,000,000 × 1식 = 2,000,000	
운영비(210)	일반수용비(01)	· 현수막 및 포스터	· 150,000 × 1식 = 150,000	1,150,000
		· 프로그램진행비	· 100,000 × 10회기 = 1,000,000	
업무추진비(240)	사업추진비(01)	· 식비 및 다과	· 8,000 × 10명 × 10회기 = 800,000	800,000
.	.	.	.	.

#### 2) 기관부담액

(단위 : 원)

구분(비목)	보조세목	세부내용	산출내역	총액
합 계				

#### 3) 청소년참가비 : 1인기준 참가비 명시

(단위 : 원)

구분(비목)	보조세목	세부내용	산출내역	총액
합 계				

##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 유사내용

### 공통기준2

- (예산) 사업비의 세부산출내역 확인
- (예산) 시설 자체보험이 아닌 별도의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보험 예산 수립

# 숙박형 등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



#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주요내용

**개정** '13.5.28 **시행** '13.11.29

이동·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의무화(제9조의 2)

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(제9조의 3)

신고 수리된 이동·숙박형 청소년활동정보 공개  
(제9조의 4)

**개정** '14.1.21 **시행** '14.7.22

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(제9조의 2)

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 
표시·고지(제9조의 5)

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(제9조의 6)

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(제18조의 3)

운영중지 명령 등(제20조의 2)

일정규모이상, 고위험활동 인증의무(제36조)

수련활동 위탁제한(제39조)



#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

##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

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.

**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**



##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



숙박형 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



비숙박형 활동 중  
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 
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운영하려는 자



## 신고 제외 대상



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 
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 
운영하는 경우



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 
함께 참여하는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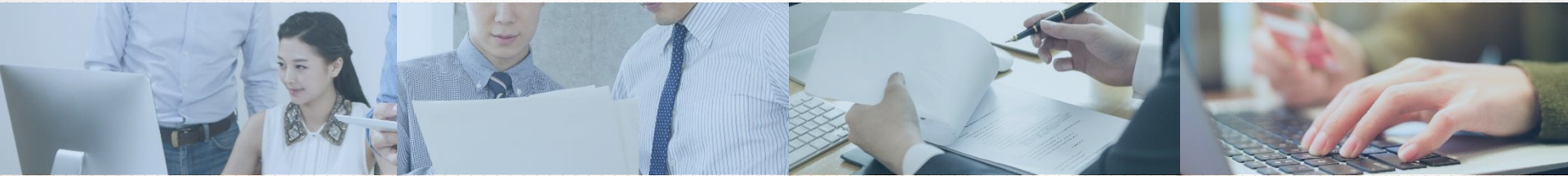
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



해당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 
실시하는 경우

-스카우트, 걸스카우트, 한국청소년연맹, 한국해양  
소년단연맹, 4에이치활동단체, 청소년적십자

# 신고제도의 추진절차



활동신고

활동주최자



접수

처리기관



검토

처리기관



신고수리

처리기관



정보표시

e청소년 활용



참가자 모집

활동주최자



건강확인

활동주최자





활동운영

운영담당자

시도센터 모니터링

참가자모집 14일 전 신청

# 신고 구비서류

구 분	구 비 서 류 명
 <p>온라인 접수 시 자동생성됨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</li> <li>2)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</li> <li>3) 주최자·운영자·보조자 명단</li> </ol>
 <p>온라인 접수 시 별도 파일 첨부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)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행규칙 별표1 운영기준을 포함한 계획서(시행규칙 제1조2)</li> <li>▪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5) 보험 가입 사실 증빙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보험증권 등 법 제25조에 따른 증빙서류</li> <li>▪ 보험가입 청약서 등 신청서는 부적절함</li> <li>▪ 보험 상품(‘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’, ‘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’ 등)은 무관하나</li> <li>▪ 법정금액 이상 가입이 증빙 되어야 함 (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13조 : 사망 시 8천 이상)</li> </ul> </li> </ol>

# 인증대상? 신고대상?

	구 분	신고대상	인증의무대상
영리법인, 단체 청소년수련시설	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	○	○
	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	○	○
	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 활동	○	×
	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 활동	×	×
종교단체 보호자*와 함께 하는 활동 *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(부모) 타 법률의 지도 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, 단체	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	×	○
	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	×	○
	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 활동	×	×
	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 활동	×	×
청소년단체(6개 단체*) • 스카우트, 걸스카우트, 청소년연맹, 해양청소년연맹, 4H활동, 청소년적십자 **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단체	모든 청소년수련활동 (회원대상 실시의 경우)	×	×
	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(회원대상 실시가 아닌 경우)	×	○

#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관련 사항



#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

##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

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·등록·인가·허가를 받은 법인·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하며,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[중요 프로그램]

-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
-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(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함)

# 위탁제한, 수련활동제한 어디까지?



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직접 모집하는 스키캠프 어떻게 운영해요?

» 스키강사를 직접 고용(기간/일용)하거나,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!



유스호스텔에서 인근 명승고적을 방문하는 활동, 불법인가요?

» 유스호스텔에서 인근 명승고적 방문은 가능하다는 해석 사례 있음



방과후아카데미가 다른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진로캠프에 참여해도 되나요?

» 수련원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형태이고, 아카데미는 이용고객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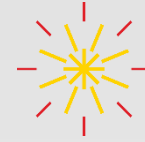
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이 함께 청소년 캠프를 운영해도 되나요?

» 업무협약,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가능! 단, 프로그램 위탁에 유의!



일부 프로그램만 전문지도자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 괜찮나요?

»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



# 감사합니다

